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토박이의 정의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선정방법 (안 제4조)
-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안 제5조)
-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72, 팩스 : 02-3396-8612, email :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교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이 토박이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 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 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서울특별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제3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토박이 인증패)

- 인증패 : 원목 기념패 (크기 : 128mm x 230mm)



(토박이증)

- 신분증 재질(크기) : 폴리염화비닐(PVC)(850mm x 540mm)
- 발급번호 부여방식 : 발급신청연도-일련번호 ex) 2024-001
- 발급대상자 : 서울 중구 토박이 선정자 중 신청자
- 신분증 디자인(안)

발급번호 0000-000

서울 중구 토박이증

성명 : 홍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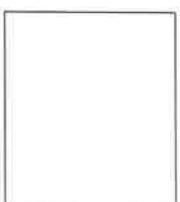
생년월일 : 1900.00.00.

선정년도 : 0000년

위 사람은 '서울 중구 토박이'임을 증명함.

0000. 00. 0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인)



1. 본 증은 발급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자치행정과)

[별지 제1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 신청서

우리구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하신 『서울 중구 토박이』를 찾고 있습니다. 토박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대상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안의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조의 직업, 경력, 업적 등◦ 가보, 특이한 유품 등		
거주사실 및 옛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정착지역 및 연대◦ 거주지 이동(이사) 내역◦ 거주지 옛 기억(옛 모습, 역사적 장소, 추억 등)◦ 중구 내 계속 거주기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증 발급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서울 중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일
일
일

신 청 일 (서명 또는 일)

붙임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3.5cm×4.5cm)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